

2020

하반기 개정 내용

7월 1일부터 적용

건축
공사 **표준품셈**

건설연구원

페이지·행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68 상에서 9행 이기시행	<p>1.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</p> <p>3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담당자,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. (신설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69 상에서 4행	<p>2.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,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TON/m²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폐콘크리트류</th> <th>폐금속류</th> <th>폐보드류</th> <th>폐목재류</th> <th>폐합성수지류</th> <th>혼합폐기물</th> <th>총 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신 축</td> <td>주거용 단 독 주 택</td> <td>0.03200</td> <td>-</td> <td>0.00051</td> <td>0.00300</td> <td>0.00174</td> <td>0.00653</td> <td>0.04378</td> </tr> <tr> <td>아 파 트</td> <td>0.03561</td> <td>-</td> <td>0.00066</td> <td>0.00416</td> <td>0.00233</td> <td>0.00874</td> <td>0.05150</td> </tr> <tr> <td>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</td> <td>0.04888</td> <td>-</td> <td>0.00117</td> <td>0.00141</td> <td>0.00445</td> <td>0.00664</td> <td>0.06255</td> </tr> <tr> <td>철 골 조</td> <td>0.02920</td> <td>-</td> <td>0.00117</td> <td>0.00071</td> <td>0.00167</td> <td>0.00353</td> <td>0.03628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해 체</td> <td>주거용 단 독 주 택</td> <td>1.3321</td> <td>0.0010</td> <td>-</td> <td>0.0968</td> <td>0.0263</td> <td>0.2030</td> <td>1.6792</td> </tr> <tr> <td>아 파 트</td> <td>1.4770</td> <td>0.0655</td> <td>-</td> <td>0.0150</td> <td>0.0261</td> <td>0.1637</td> <td>1.7993</td> </tr> <tr> <td>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</td> <td>1.4028</td> <td>0.0170</td> <td>-</td> <td>0.0638</td> <td>0.0215</td> <td>0.1348</td> <td>1.6959</td> </tr> <tr> <td>철 골 조</td> <td>0.9167</td> <td>0.0550</td> <td>-</td> <td>0.0194</td> <td>0.0261</td> <td>0.1348</td> <td>1.1624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철골철근콘크리트조</td> <td>1.5861</td> <td>0.1220</td> <td>-</td> <td>0.0018</td> <td>0.0245</td> <td>0.1452</td> <td>1.879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주) (1)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, 페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.</p> <p>(2)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,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.</p> <p>(3)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(연면적/건축면적)이 20 미만일 경우 15%, 20을 초과할 경우 20% 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.</p> <p>(4)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%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.</p> <p>(5) 건축물의 특성,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.</p>	구 분		폐콘크리트류	폐금속류	폐보드류	폐목재류	폐합성수지류	혼합폐기물	총 계	신 축	주거용 단 독 주 택	0.03200	-	0.00051	0.00300	0.00174	0.00653	0.04378	아 파 트	0.03561	-	0.00066	0.00416	0.00233	0.00874	0.05150	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	0.04888	-	0.00117	0.00141	0.00445	0.00664	0.06255	철 골 조	0.02920	-	0.00117	0.00071	0.00167	0.00353	0.03628	해 체	주거용 단 독 주 택	1.3321	0.0010	-	0.0968	0.0263	0.2030	1.6792	아 파 트	1.4770	0.0655	-	0.0150	0.0261	0.1637	1.7993	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	1.4028	0.0170	-	0.0638	0.0215	0.1348	1.6959	철 골 조	0.9167	0.0550	-	0.0194	0.0261	0.1348	1.1624			철골철근콘크리트조	1.5861	0.1220	-	0.0018	0.0245	0.1452	1.8796
구 분		폐콘크리트류	폐금속류	폐보드류	폐목재류	폐합성수지류	혼합폐기물	총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축	주거용 단 독 주 택	0.03200	-	0.00051	0.00300	0.00174	0.00653	0.0437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아 파 트	0.03561	-	0.00066	0.00416	0.00233	0.00874	0.05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	0.04888	-	0.00117	0.00141	0.00445	0.00664	0.062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 골 조	0.02920	-	0.00117	0.00071	0.00167	0.00353	0.036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 체	주거용 단 독 주 택	1.3321	0.0010	-	0.0968	0.0263	0.2030	1.679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아 파 트	1.4770	0.0655	-	0.0150	0.0261	0.1637	1.799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	1.4028	0.0170	-	0.0638	0.0215	0.1348	1.69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 골 조	0.9167	0.0550	-	0.0194	0.0261	0.1348	1.16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철골철근콘크리트조	1.5861	0.1220	-	0.0018	0.0245	0.1452	1.879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·행	개 정									
p91 상에서 11행	<p>2-8-1 낙하물 방지망(비계) 설치 및 해체</p> <p>(주) (1)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 방지망(수평방향 3m 이하)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본 품은 지지대, 연결재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2)→(3) 이기시행</p> <p>(3)→(4) "</p> <p>(4)→(5) "</p>									
p92 상에서 3행	<p>2-8-2 낙하물 방지망(플라잉넷) 설치 및 해체</p> <p>(주) (1)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(플라잉넷)를 사용한 낙하물 방지망(수평방향 3m 이하)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본 품은 브래킷, 사다리, 와이어로프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2)→(3) 이기시행</p> <p>(3)→(4) "</p>									
p92 하에서 7행 신설	<p>2-8-3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방호) 설치 및 해체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0m²당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단 위</th> <th>수 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 계 공</td> <td>인</td> <td>0.25</td> </tr> <tr> <td>보 통 인 부</td> <td>"</td> <td>0.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주) (1)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 방지망(수평방향 4m 이하)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본 품은 지지대, 연결재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3)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</p> <p>(4)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p>	구 분	단 위	수 량	비 계 공	인	0.25	보 통 인 부	"	0.10
구 분	단 위	수 량								
비 계 공	인	0.25								
보 통 인 부	"	0.10								
이기시행	<p>2-8-3→2-8-4 방호선반 설치</p> <p>2-8-4→2-8-5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</p> <p>2-8-5→2-8-6 비계 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</p> <p>2-8-6→2-8-7 비계 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</p> <p>2-8-7→2-8-8 갯폼 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</p> <p>2-8-8→2-8-9 방진망 설치 및 해체</p>									

페이지·행	개 정					
p95 下에서 1行 신설	2-8-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		
구 분	단위	개구부 면적				
		1.0m ² 이하	1.0~3.0m ² 이하	3.0~6.0m ² 이하	6.0~9.0m ² 이하	9.0~12.0m ² 이하
비 계 공	인	0.49	0.63	1.01	1.30	1.60
<p>[주] (1) 본 품은 창호,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,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3)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p>						
p95 下에서 1行 신설	2-8-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(10m당)					
구 분	단위	브래킷형		앵커형		
		2단	3단	2단	3단	
비 계 공	인	0.56	0.62	0.64	0.70	
비 고	-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.					
	설치간격	1.0m 이하	1.5m 이하	1.5m 초과		
	요율	110%	100%	90%		
<p>[주] (1) 본 품은 발코니,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2단은 상부 난간대와 중앙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, 3단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.</p> <p>(3) 본 품은 난간 기둥,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4)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.</p> <p>(5)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p>						

페이지·행	개 정			
p95 下에서 1行 신설	2-8-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
구 분	단 위	브래킷형	앵커형	
비 계 공	인	1.40	1.45	
<p>[주] (1)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난간대 규격은 길이 2.5m 이하, 난간대 2단 기준이다.</p> <p>(3) 본 품은 난간 기둥,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4)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.</p> <p>(5)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p>				
p95 下에서 1行 신설	2-8-13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
구 분	단 위	수 량		
비 계 공	인	0.80		
<p>[주] (1)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난간틀 규격은 높이 1.4m 이하, 길이 1.3m 이하를 기준한다.</p> <p>(3)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				
p95 下에서 1行 신설	2-8-14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
구 분	단 위	수 량		
비 계 공	인	1.50		
<p>[주] (1)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추락방호망 규격은 5~9m² 이하를 기준한다.</p> <p>(3)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4)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p>				

페이지·行	개 정		
p95 下에서 1行 이기시행	2-8-9 → 2-8-15 터널 방음문 설치 및 해체		
p96 上에서 15行 신설	2-8-16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 (m당)		
	구 분	단 위	수 량
	비 계 공	인	0.12
	<p>[주] (1)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</p> <p>(2)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.0m 기준이다.</p> <p>(3)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,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·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</p> <p>(4)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.</p> <p>(5)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p>		